

제439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1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5.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 의사일정 상정의 건	9
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0
4.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11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5.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11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1. 간사 선임의 건	27
2.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28

(15시15분 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9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의 김승원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의겸 위원님이 보임되었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김의겸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환영합니다.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김의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의겸입니다.

어제까지 산중위에서 일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저도 갑작스럽게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21대 때 법사위에서 경험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배우고 또 야당 위원님들과 함께 법사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선임하고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선출한 후 행안위 소관 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아 오셨던 김승원 위원님께서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우리 위원회를 사임함에 따라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새로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의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반대하는 이유 정도는 들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적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표결하려면 인사에 관한 건데 무기명투표를 해야지요.

○위원장 서영교 예?

○곽규택 위원 무기명투표를 해야지, 표결을 하려면. 인사에 관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교 인사에 관한 건 무기명투표입니까?

○곽규택 위원 나경원 간사 때 투표소 차리고 표결했잖아요. 그리고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의 이유를 들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교 잠깐 기다리세요, 손가락질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

○박형수 위원 이의 이유부터 일단 들어 봅시다.

○위원장 서영교 이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 봐요, 좀.

○곽규택 위원 왜 못 해요? 뻔하지, 뻔해.

○위원장 서영교 기다려 봐요, 좀.

그러면 이거는 토론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꼭 토론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이의 있으면 그냥 표결하면 되는 거지요?

이것은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요. 곽규택 위원님,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일정 2항에 소위원회 위원 개선하고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면서 거기서 토론의 내용이 있어요. 그때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쪽 가면서 그때 한번 있어요. 그때 하시지요.

○곽규택 위원 아니, 그런데 소위원장 인선하는 것은 별도지요. 엄연히 절차가 다르지요. 간사 선임의 건이 올라왔으면 간사 선임의 건이 지금 1항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했고 이것은 인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무기명투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례를…… 마이크도 안 넣어 주네. 그 전례를 민주당에서 만드셨어요, 분명히.

○위원장 서영교 잠깐만요. 아니, 지난번에 간사 선임할 때 무기명투표했나요? 박형수 간사님, 김승원 간사님 할 때 무기명투표했어요?

○곽규택 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나경원 간사에 대해 가지고 무기명투표해 가지고……

○박형수 위원 그때 이의가 없었고……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이의가 없어서……

○박형수 위원 나경원 간사 때는 이의가 있어 가지고 투표를 했다 그러대요.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나경원 간사 때 이의가 있어서 투표를 했나? 그런 기억이 없는데, 내가? 그런 기억이 있나요?

○곽규택 위원 기억의 시한이 그렇게 짧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우선 간사 선임 건 상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는 여기서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안건을 상정하는데 안건에 이의가 있으면 우선 저희가 표결해서 이걸 안건 상정을 의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위원회 위원 구성 그다음에 소위원장 선출 이것 관련해서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토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의제기하는 부분을 좀 들어 보고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시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3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의제기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지 토론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의제기는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김의겸 위원님 법사위에 오신 것은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김의겸 위원님의 이름을 들으면 국민들께서 딱 두 가지를 떠올릴 겁니다. 청담동 술자리 괴담 그다음에 흑석대감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두 가지로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법사위의 위원으로 계시는 것하고 여당의 간사를 맡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에 계셨다고 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청담동 술자리 괴담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법사위 안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청담동 술자리 괴담, 어떻게 됐나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신 건 맞으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흑석대감, 흑석동에 상가 투자하신다고 영끌해 가지고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 서영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세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한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에게 해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을 꼭 봐야 위원장한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 보고 해요.

○곽규택 위원 보기 싫어서 안 봐요.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 보고 해.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세요.

○곽규택 위원 그때 상가에 투자하신다고 영끌하시면서 아마도 본인 살고 있던 집 거기도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께서 김의겸 위원님을 생각하시는 것이 과연 법사위 여당 간사로 적절한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1년 동안이나 선임 안 해 주시고 간사 없는 법사위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 지금 김의겸 위원님에 비하면 그때 간사 선임 안 했던 이유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망신 주기 하려고 법사위 안에다가 무기명투표소 차려 놓고 투표까지 했었어요.

저는 이런 것이 민주당이 만든 아주 잘못된 선례이기 때문에 그 선례를 만든 이상은 다시 그 선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무기명투표로 간사 선임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의사진행발언하셨고……

○김의겸 위원 잠깐……

○위원장 서영교 하시겠습니까?

○**김의겸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잠깐 의사진행발언으로 3분 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위원** 광규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짧게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흑석동 건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담동 건에 대해서는 당시 시절이 하 수상하던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서로 대립하고 격돌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은 그 일대로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달라진 환경에서 새로운 조건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야당 위원님들 잘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이 건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선임이 안 됐던 그 과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연히 나경원 의원을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우연히 만났나 봅니다.

아무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재판, 소위 말하는 빠루 사건이라고 많이 불렸던 그 사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배우자인 남편분께서 춘천지방법원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체포 방해죄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가 이해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간사로서,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아예 법사위에 계시면 안 된다는 입장들이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는 부결을 시켰던 것이고 부결이 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당시에 아마 정기국회 때 부결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내에 다시 일사부재의 때문에 의결이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 원내와 민주당 원내 간에 상호 협의해서 새로 결정할 문제로 남겨 둔 채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거 상황이 만만치 않네.

○**박은정 위원** 비교섭도……

○**위원장 서영교** 예. 의사진행발언……

○**김태규 위원** 편하게 갈 걸 굳이굳이 이렇게 만드네요.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박형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너무 계속하는 것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든 어쨌든 그다음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오늘 의사진행발언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이걸로 계속해서 공방을 하면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민 위원께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재판받고 있었습니
다. 그런 사유 때문에 간사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패스트트랙으로 재판받고
있었던 박범계 의원은 법사위 간사 다 했고요. 그 재판 받으면서 법무부장관까지 했습니
다. 그게 사유가 됩니까? 어떻게 이쪽은 그렇고 저쪽은 적용을 안 합니까?

○김태규 위원 부부 간에 대법관, 헌법재판관 앉히려는 정당에서 남편 가지고 얘기합니
까?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충돌이지요. 이해충돌 피하면 되지요.

○박형수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들읍시다, 김용민 위원님.

그래서 그런 사유이고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잖아요. 실질적인 이유는 나경원 간사
가 5선을 했는데 5선 하고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이 법사위 간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추미애 위원장이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법사위 위원장으로 와 가지고 그래서 법사위를 정말로 그때도 난
장판으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나경원 간사를 법사
위 간사로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고깝다고 해 가지고 앞엿것 생각 안 하고 뒤에
부분만 해서, 나경원 간사는 갖가지 핑계를 댄 거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범계 의원은 패스트트랙 재판받고 있으면서, 똑같은 패
스트트랙으로 재판받고 있으면서 법무부장관까지 했는데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공방을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김용민 위원 실제 나경원 의원 내란으로 기소됐잖아요.

○김태규 위원 그만합시다 좀!

○김민전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란이라니.

○김태규 위원 왜 자꾸 일을 키워요?

○김용민 위원 한 번씩 하셨으니까 이제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이번에 박은정 위원님만 말씀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왜 그쪽에서 일을 키우냐고요. 그렇잖아요? 왜 그쪽에서 일을 키웠어요?

○박은정 위원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이 불발된 것은……

○김동아 위원 간사 선임 얘기하셨잖아.

○김태규 위원 아니, 김용민 위원이 키운 거 아니야, 지금?

○김용민 위원 내가 뭘 키워요?

(장내 소란)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박은정 위원 말씀을 드리면 지난 상반기 법사위는 윤석열 내란수괴의 12·3 내란 직후
에 내란에 대한 수사,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소관 상임위
가 법사위였습니다. 내란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그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관저에 50여 명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관저에 가서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부적절한, 국회의원으로서도 부적절하고 공직자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언행으로 내

란을 옹호한,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에, 내란 범죄가 수사되고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을 소관하는 법사위의 법사위원으로서는 부적격한 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간사로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패스트트랙 그 재판으로 유죄선고를 받아서 폭력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 방해로 지금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간사 선임을 저희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이후에 민생법안들에 대해서, 타위법들이 계속 밀려 있습니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멀쩡하게 법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시겠다는 간사에 대해서 탄지를 걸고 발목잡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게 나경원 의원과 그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내란에 대해서 반성을 하시고 내란범죄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반성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반성을 먼저 하시고 법사위의 발목을 잡지 마시기를, 그리고 존경하는 법사위원장님께서 이 간사 선임을 비롯해서 오늘 법사위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김태규 위원 경고 좀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왜? 내가 뭘?

○김용민 위원 계속 예의 없이 반말하시고……

○곽규택 위원 서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김용민 위원 아니, 너무 쳐다봐서 부담스러워요. 자리 좀 바꿔 주세요.

○김태규 위원 아니, 이빠서 쳐다봤어. 왜?

○곽규택 위원 칸막이 치세요, 앞에다가.

○김태규 위원 보는 것도 문제가 돼요?

○김용민 위원 보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김태규 위원 왜 보지 마?

○위원장 서영교 김태규 위원님……

○김용민 위원 태도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태도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김태규 위원 당신 지금 뭘 소리 하는 거야!

○위원장 서영교 정확한 표현이에요.

○김용민 위원 저한테 당신이라고 계속 하고……

○김태규 위원 당신 태도는 정상적이야, 지금?

○위원장 서영교 김태규 위원님……

○김용민 위원 무슨 말을 하면 노려보고 비아냥거리고 반말하고 너무 이상합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까지 비아냥거린 게 누구데?

○김용민 위원 너무 이상해요.

○김태규 위원 비실비실 웃으면서 비아냥거린 게 누구데?

○김용민 위원 내가 언제 그랬어요?

○김태규 위원 김용민 위원님, 위원님……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경고를 주시고 자꾸 이러시면 발언권도 제한해 주시고……

○곽규택 위원 아니, 괜히 불란 만들지 마시고……

○김태규 위원 위원님.

○김용민 위원 왜?

○김태규 위원 뭐?

○김용민 위원 다 들으니까 이제 위원님 하세요? 아까는 당신, 당신 하더니. 계속 반말 하세요, 그냥.

○위원장 서영교 이제 조용히 하세요.

○곽규택 위원 서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김용민 위원 나는 반말 안 했어요.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쳐다보세요. 하실 수는 있는데 계속 쳐다보는 건 너무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이 안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야기하셨고,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에 대한 표결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영교 간사 선임의 건이요.

○곽규택 위원 그것 인사에 관한 거면 무기명투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교 우선 손 들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손 내려 주시고요.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그러니까 반대하는 위원님 지금은 한 분, 반대는 한 분……

○곽규택 위원 무기명투표 해요.

○박형수 위원 전에도 다 무기명투표를 했다는데 왜 그걸 위원장님 마음대로 손 들고 그래요?

○김민전 위원 무기명 하셔야지요, 무기명.

○위원장 서영교 아니,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할 때니까 우선……

○주진우 위원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냥 하면 어떡합니까?

○김태규 위원 아니, 미리 검토를 하고 해야지 해 놓고 검토를 해? 이것도 형사소송법에요, 나중에 보완하게?

○곽규택 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검토하세요, 정회하고.

○위원장 서영교 우선 찬성하는 위원님들과 반대하는 위원님들 구분을 좀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곽규택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서영교** 기다려 보세요.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으시고 투표 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말씀하셔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3항부터 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무기명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수로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때 다 검토해 가지고 무기명투표 하셨잖아요. 검토를 몇 번씩 합니까, 같은 것 가지고?

○**위원장 서영교** 그 검토도, 무기명으로 하는데 무기명으로 찬성하면 무기명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진행해 나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국회법을 검토해 보라고 할게요.

○**곽규택 위원** 아니, 무기명투표를 해야 되는데 손 들고 한 다음에 무기명투표 하면 공산주의입니까, 지금?

○**박형수 위원** 이것 사전검열이에요. 투표검열이에요, 투표검열.

○**곽규택 위원**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김태규 위원** 종전의 전례가 잘못됐다, 전례로 인지하고 수정하자 이 정도 말만 하면 끝날 일을 굳이굳이 그런 걸 가지고 끌어 부스럼 만들어 가지고 이 짓을 해 놓고……

○**위원장 서영교** 이 짓이라니? 김태규 위원 국회법 145조에 의해 경고합니다.

○**김태규 위원** 경고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경고합니다.

○**김태규 위원** 또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좋아요, 경고해 주니까?

○**곽규택 위원** 짓이라는 뜻은 순우리말 좋은 말이에요. 찾아 보세요.

○**위원장 서영교** 경고하니까 아주 좋은 모양이지요. 경고했습니다. 말씀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당시에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없는 분 얘기 자꾸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시에 우리 쪽에서도 전용기 의원을 사보임하고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을 사보임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하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전용기 의원 사보임을 국민의힘에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전용기 의원이 못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시키고 그리고 전용기 의원을 사보임해서 여기 법사위원으로 구성하자고 서로 양쪽이 다 합의해 놓고 그때 전용기 의원을 못 오게 해서 무소속으로 최혁진 의원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더 센 초선이 왔다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합의한 걸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사 선임 건도 보류되었던 겁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고 갑니다.

그러면 먼저 타위법 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5시38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최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최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님 그리고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은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여야가 합의한 안건으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안대로……

아, 3항이군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호중 장관님, 송두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오셨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뜻이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의로 이 연장안을 처리해 주셔서 여야 모든 위원님들께 감

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송두환 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두환 저는 정작 오늘이 법률안의 당사자가 되는 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여러 고견들과 그리고 유가족, 피해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가 주어진 과업을 완결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의결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오늘 의결한 법률안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5.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15시44분)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한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김한규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에 대해서는 검찰국 소관 예산집행 세부내역 미제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예비비 전용 및 과다 배정·불용 개선 필요 등 총 11건에 대해서 주의를 요구했으며, 총 44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법제처 소관에 대해서는 청소년 법제관 사업 실효성 종합적 재검토 필요에 대해

여 주의를 요구했고, 총 8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감사원 소관에 대해서는 유병호 감사위원의 위법·부적절한 감사 관련 예산집행 실태 재점검 1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고, 총 7건에 대해서 주의를 요구했으며 총 10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조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정과 주의를 각각 요구했고 총 6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해서는 총 3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했고, 총 8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대법원 소관에 대해서는 내역변경 없이 타 사업에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집행 시정 필요 등 총 4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고, 총 13건에 대해서 주의를 요구했으며, 총 1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총 4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한규 예결소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결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김호철 감사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출석하셨습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사정이 있어 기우종 차장께서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이번에 내란특검 등등해서 작년에 있었던 특검들이 특활비를 수십억 썼는데 법무부차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주진우 위원 법무부가 거기 직접 감독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특검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부가 예산 편성과 집행 관련해서 부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진우 위원 직접 관리 감독 못 했지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진우 위원** 오늘 제가 좀 황당하게 생각하는 게 결산과 관련해서 국민 세금을 단돈 1000만 원을 써도 지금 여기 나와서 검증을 받는 게 원칙인데 수십억 원의 특활비를 썼는데 특활비 쓴 내역을 하나도 제출 안 하고 또 출석도 한 명도 안 하고 또 법무부를 통해서 대리서면의견을 냈는데 이게 지금 예산 원칙상 맞는 일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 법무부에서는 특활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특검의 자료……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주진우 위원** 검찰도 지금 작년 결산·예산할 때부터 특활비 공개 내역 때문에 저희가 설전을 엄청나게 벌였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특활비와 관련해서 거의 다 공개하고 있지 않나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일시와 그다음에 기밀이 필요한 부분은 비실명 내지는 비기명 표시를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법무부가 기본적으로 모든 수사 업무나 관련된 업무의 관리 감독 부서인데 특검에다가 그것을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고 또 특검이 직접 예산안을 짤 수가 없기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서 짤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짜는 데 관여했으면 당연히 특활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서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특검은 아시다시피 법률에 따라서 설치되는 독립기관이고요. 설립 경위에 따라서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변명하는 답변을 왜 대신 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임시 활동 기간이 정해진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공식 입장도 일부 익명 처리를 하지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전부 다 제출하라는 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국회 요구에 따라서 저희는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전향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는 당연히 특검이 나오고 특검과 관련된 사람이 나와서 누구 한 명이라도 여기 와서 설명을 해야지 지금 예산 수십억 원에 더더군다나 증빙을 하나도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수십억 원을 현금으로 썼는데 이 특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저는 국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특검을 불러서 이 부분 확인해야 결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오늘 처장님 왜 안 나오셨어요, 결산하는 날인데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짧게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오늘 대법원장님 상 발인 때 갔는데 지금 상경 중이신 것 같습니다. 어제 예결위 늦게까지 계시다가 새벽에 내려가셔서……

○**김용민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 법원의 결산을 하는데 처장이 안 나왔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따끔

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님, 8월 31일 그러니까 어제지요.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법관 12명한테 평균 200만 원씩, 매월 통상 두 차례네요. 계속 현금을 지급했어요, 격려금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격려금은 활동이 우수한 부서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일정액을 월마다 지급하는 것은 격려금 지급의 집행 원칙에는 어긋나서 저희가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실제로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특활비를 지급했고 그때 보니까 법원행정처장은 월 평균 436만 원 그리고 대법관은 월 평균 100만 원을 계속 받아왔는데 특활비가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격려금을 지금 이렇게 특활비처럼 지급을 계속해 왔어요. 맞습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그 경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살피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예산집행 원칙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게 어긋난 점은 지적을 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났다고 함은 감사원장님이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옆에 있지만 그래도 강하게 질타하셔야 됩니다.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났다고 하면 격려금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잘했을 때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업무로 굉장히 힘이 들어서 그거를 위로 혹은 격려할 때 간헐적으로, 그 금액도 일률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비정합성을 가지고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김용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금액도 딱 정해서 지급한 것은 사실상 급여 혹은 특활비, 그것도 현금으로 지급됐지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대법원에서 이 현금이 어떻게 집행됐고 격려금이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에 대한 자료도 못 받았다면서요?

○**감사원장 김호철** 그 경위를 살필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이 결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요. 아까 처장님은…… 아, 차장님이지요.

차장님, 아까 우리 예결소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미 집행된 것이 지금 위법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저희가 아까 소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소부 합의 기일이라든가 소부 기일 또 전합 기일에 수고한 재판연구관들이라든가 또 사무관들한테 지급했던 것인데 기일 자체가 정기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여질 여지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원의 지적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민 위원** 지금 대법관한테 지급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일이 대법관을 통해서 지급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맞습니까, 감사원장님?

○**감사원장 김호철** 그 경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받지 못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법원행정처 차장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예, 있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금방 말씀으로는 연구관들에게 주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예, 연구관들을 격려하는 돈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은 대법관에게…… 그것이 감사원이 발표를 할 때는 연구관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용인데 그게 대법관에게 현금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신 거지요, 감사원장님?

○**감사원장 김호철** 예.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지적했는데 지금 말씀은 연구관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팩트가 좀 다른데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대법관을 통해서 지급됐기 때문에 실제로 대법관이 받은 자료만 있습니다. 대법관이 그 돈을 받았더라는 것에 도장을 찍은 것만 있어서 아마 감사원에서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어느 대한민국에…… 줄 때 대법관실로 주면 몰라도 대법관에게 주면서 그게 연구관에게 갔다 이렇게는 되지 않지요. 대법관에게 주는 건 대법관에게 가고, 대법관실로 가면 그 연구관으로 가고 그럴 텐데 대법관실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연구관들에게 갔다면 가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 비용이 누구에게 갔고 그리고 대법관에게 갔지만 밑의 연구관에게 갔다라고 하는 확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예, 찾아보고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민 위원님 말씀처럼 법원행정처장께서 왜 출석을 하지 않지요? 어제도 우리가 증인으로 출석되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저희가 회의를 충분한 논의 끝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출석하는 게 맞지요, 그것도 결산에 관한 것인데. 옆에 감사원장님도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예,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지금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저희도 포항 다녀왔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기는 합니다, 제 목소리도 그렇고.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시고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위원장 서영교 윤상현 위원님이 먼저 토론하신다고 했으니까요. 토론하시고 그다음 박은정 위원님 하시고.

○박은정 위원 같은 내용이어서 제가 이어서 하는 게……

○위원장 서영교 먼저 하셨으니까 먼저……

○박은정 위원 순서대로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한 번 하고 여기 했으면 비교섭에 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서영교 손을 나중에 드셨으니까 먼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 법제처장님, 한 가지 여쭙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자 제청 잘 알고 계시지요?

○법제처장 조원철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 제청을 했는데 사전 조율이 안 되고 그러면서 서면 제청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침해했다, 이게 법제처의 해석입니까?

○법제처장 조원철 저희가 해석을 내린 바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 해석은 내린 바 없지요. 실질적 임명권 침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 실질적 임명권이 있고 명목적인 임명권 이런 식으로 임명권이 다른가요? 그런데 청와대 해석을 보면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권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결국 소위 말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하고 국회의 임명동의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간에 우열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처장님 잘 아시다시피 104조 2항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우열적인 권한에 대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확실한 유권해석을 해 줘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처장님?

○법제처장 조원철 그것은 저희 법제처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바가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 요청받은 바도 없습니까?

○법제처장 조원철 예.

○윤상현 위원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그냥 정치적인 해석을 한 거네요. 법률적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을 통해서 재제청권을 행사했거든요.

○법제처장 조원철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헌법의 어느 조항을 보더라도 재제청권을 요구한다, 다시 재제청을 하게끔 요구한다, 이 권한도 없습니다. 결국 헌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소위 말해서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제청권, 임명동의권, 임명권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동등한 권한 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다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자를 재제청 요구를 한 것은 결국은 국회의 임명동의권까지도 침해하는 것이고.

그러면 정석은 뭐냐? 그대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것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 그래서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 자질, 여러 면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는 헌법적 해석이 아닌가……

○**법제처장 조원철**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해석이기는 하지만……

○**윤상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처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주십시오. 저한테나 법사위에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조원철** 일단 대통령께서 제청을 받았을 때 만약에 임명하실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굳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청권에 기속되지 않는다면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상현 위원** 하여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보내 주십시오.

○**법제처장 조원철** 일단 법제처는 정부 내에서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곳이고 헌법기관 사이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기우종 차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하고 법사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이어 가지고 여쭙보고 싶은 게, 이게 격려금으로 지급이 됐고 대법관께서 받으셔서 연구관에게 지급이 된 이런 경로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저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2025년도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은 조직과 기관을 대표하는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판연구관에게 얼마나 지급됐는지는 자료로,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거네요, 지금?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예산 집행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래서 지침 위반이라는 점 때문에……

○**박은정 위원** 그 지침의 위반인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그것을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대법원이 지금 계속해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이 상고심, 특히 내란 범죄자들, 국정농단 범죄자 김건희·한덕수·이상민에 대해서 전합으로 회부를 하셨고, 그런데 상고심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지점에 지금 분노하는 것 같거든요.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내란특검법 등에 따르면 그다음에 김건희특검법 등에 따르면 6·3·3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 7월 28일 날 선고가 돼야 됩니다.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8월 7일,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8월 12일—6·3·3 원칙에 따르면요—선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 전함으로 회부가 됐고 상고심이 열리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그런 대법관에게 격려금이 지급되었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고심 전원합의 기일은 매주 목요일 날…… 세 번째 목요일 날 열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예, 보통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게 지금 안 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여름에는 휴정기여서 그랬는데 아마 9월에는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한덕수·이상민에 대해서 전함에 이렇게 재판이 지연된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부를 시켜 놓고 상고심 재판 기일이 열리지 않는 데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이 지급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지침 위반으로 이런 부분들은 대법원 예산 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개선해야 하고 상고심 기일,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재판 기일 운영에 관해서는 행정처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저희가 새기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김건희·한덕수·이상민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전에 상고심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고될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아니, 그것 제가 약속드릴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대법관님들이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손술 위원님 토론하시고…… 김의겸 위원님이 아까 손 먼저 드셨어요.

김의겸 위원님 토론해 주시고 광규택 위원님 토론하시고 손술 위원님 토론하고 그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위원** 감사원장님, 법사위에 막 새로 들어왔습니다.

김부겸입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축하드립니다.

○**김의겸 위원** 심사보고를 이제 막 보니까 감사원과 관련해서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시정 요구가 1건 있는데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위원 시절 이전의 사무총장 시절 때

뿐만이 아니라 감사위원일 때도 특수활동비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원장 김호철** 제가 임명되기 전에 운영채신 TF라는 활동을 통해서 아마 점검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의겸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직접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현장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의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사 결과를 담은 서류를 점검하고 잘못된 게 없는지 체크하는 그런 일을 중심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위원 시절 때도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 또 조사 총책임자 이런 분들보다 훨씬 많은 특수활동비를 썼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용도가 잘 납득이 안 돼서, 그럴 경우에 이게 잘 알려진 대로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거파, 타이거사단을 운영하는 데 쓴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셔서 환수나 또 추정 이런 것을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우선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2026년부터는 감사위원에게 특활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혹시 유병호 감사위원의 특활비 지급과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하면 저희가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것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위원** 하시는 김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손술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2022년부터 이렇게 노고 격려 명목으로 현금 지급된 게 13억 원가량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게 지적받았습니다.

○**손술 위원** 이게 13억 원이 상당한 금액으로 보이거든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손술 위원** 그런데 오늘 답변에서 ‘대법관을 통해서 연구관 격려금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충격적이거든요.

13억 원이라는 돈이 연구관에게 간 것은 확실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손술 위원** 전부 다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전부……

○**손술 위원** 다 확인이 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술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부터 지적된 것에 대해서 소명하기가 어렵네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소명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이번에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손술 위원**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법관이 다른 돈을 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법관을 통해서 연구관에게 주는 돈을 이렇게 줘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연구관들의 업무 강도가 대단히 세고……

○**손술 위원** 그러면 연구관에게 직접 주든가 해야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런데……

○**손술 위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고요.

오늘 오전 예결소위에서 얘기하실 때 ‘차등적으로 주지 않은 것이 문제여서 차등적으로 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아까 좀 더 보충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손술 위원** 그것은 틀린 겁니까, 그것까지 포함인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포함된 겁니다.

○**손술 위원** 차등적으로 주지 않아서 차등적으로 주는 걸로 개선을 하겠다도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렇습니다. 지적받은 부분이 ‘정기적으로 정액이 지급된 것이 지침 위반이다’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어서 제가 일부만 말씀드려서……

○**손술 위원** 아니, 격려금을 격려금의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

○**손술 위원** 좀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렇지 않습니다.

○**손술 위원**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손술 위원** 아니, 정확하게 격려금에 맞게 하셔야지요.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감사원 사무총장님이 차장님 나가시고 나서 이게 차등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정기적인 게 문제라고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그리고 대법관에게 된 것이, 일반 직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분만 선별해서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짚는 거거든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술 위원** 예.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래서 보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대법관한테 드리면 대법관이 연구관들의 업무 실적에 따라서 거기서 차등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술 위원**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래서……

○**손술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알 수 없는 것과 말이 안 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손술 위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없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법관 1명에게 연구관이 몇 명 있나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기본적으로 3명일 때도 있고 2명도 전속으로 있지만 공동연구관이 많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공동연구관이 많은데 그것 대법관한테 줘서 공동연구관한테 갑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대법관별로 공동연구관들이 일하는 분량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서영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지 마시고요, 내가 대법관실에 가니까 연구관 1명 있던데.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비서가 1명 있고 연구관이 1명 있어서 ‘과기환송 건 담당한 연구관입니까?’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민사를 담당해서 그런 것을 안 한다고 그러면서, 연구관 1명 있던데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전속은 2명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전속으로 2명 있으면 그것도 거짓말을 한 거지. 1명 있던데, 방이 하나던데. 민사를 담당하는 사람 1명.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것은……

○위원장 서영교 어떻게 그와 관련한 자료를 내시고요. 요즘 어디에도 현금으로 주는 사례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객규택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객규택 위원 오늘 오전에 예산결산소위를 진행했는데 사실 그때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의견 일치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의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또 특검 관련자도 국회에 전혀 설명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들 우려를 똑같이 하셨어요. 특히 2025년도에는 3개의 특검이 운영됐는데 조은식 특별검사가 실제 예산 집행액은 65억인데 그중에 특수활동비가 21억이었습니다. 거의 30%였어요. 그리고 민중기 특별검사는 90억 예산 사용했는데 특수활동비가 14억, 이게 한 15% 되는 금액이지요. 그리고 이명현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54억 예산을 썼는데 7억 정도가 특활비였습니다. 10%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아까 시정요구하는 사항 중에 주의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최종적으로 명기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는 그것에 더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 특별검사제도라는 것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향후에도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예산 감시 절차는 뭐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 전체 차원에서 명확한 의견을 표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저는 부대의견 정도를 달아서 향후 특별검사제도의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사용 관련 자료 일체를 소관, 법사위에 제출하기로 한다 하는 내용 정도의 부대의견을 붙여서 이번 결산을 의결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 이에 대해서 소위에서도 언급이 있었고요, 소위에서도 여야 위원님들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소위에서 나온 의견인 것으로 보고, 말씀처럼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특검 또한 국회 결산심의 대상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익명 처리, 비공개 열람, 항목별 제출 등의 방식으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저희가 의견으로 넣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장으로서 마저 더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전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김민전입니다.

토론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법제처장님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 여쭙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윤상현 위원님 질문에 대통령이 임명할 의도가 없으면 재제청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법제처장 조원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런 것이……

○법제처장 조원철 어차피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미 없는 국회의 그 절차가 진행이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김민전 위원 정말 헌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인데요, ‘내가 임명할 의도가 없으니까 동의안을 제출 안 해도 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가? 헌법에 그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 53조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명확하게 그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4조 2항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장 조원철 의도에 따라서 그런 것……

○김민전 위원 104조는 제청권과 동의권과 그리고 임명권을 순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회의 동의권도 침해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침해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법제처장이 지나치게 공정하지 못하게 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이 출석해라’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정말 이해가 어렵습니다. 본인의 헌법적인 권한을 침해받은 것은 대법원장 아닌가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침해당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침해한 대통령을 불러야 할 텐데 왜 침해당한 피해자를 부르겠다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상중인 분을 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겠다 이런 압박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김동아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기표 위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들어 보세요.

○**김민전 위원** 그런 기사들이 있지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기사가 잘못 나왔겠지요, 그러면.

○**김기표 위원** 그러면 기사를 얘기하셔야지.

○**김민전 위원** 좋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 얘기한 겁니다, 실제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 마는.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지, 우리가 한 적이 없으니까.

○**김민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국민이 동의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연임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법제처장 조원철** 작년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전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기를 정말로 바라고요. 저는 법제처장이 그렇게 쉽게 말씀하셔서 안 된다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 뜻은 최근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봐도 70% 가까이가 현직 대통령은 연임의 적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조원철** 예, 그 당시에 법적인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뭘 우리가 이야기했다고 하신 거예요, 김민전 위원님이?

○**김기표 위원** 우리가 대법원장을 마치 출석 안 해서 처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김동아 위원** 처벌하겠더라고요……

○**김민전 위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기사에 났어요.

○**곽규택 위원**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김기표 위원** 그것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 내용이, 기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한 거였고 그것은 그 전 상황이고, 대법원장의 부친상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다 회의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벌하겠더라고요 했다고 갖다 붙인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제 다 부친상이어서 모든…… 우리가 회의를 적극적으로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면서 박형수 간사님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니까 회의가 조금 늦어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양해까지 구했고,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해서 ‘부친상도 있고 그러면 오후 회의를 하지 맙시다’라고 하고 우리는 또 포항까지 다녀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팩트가 다르니까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김민전 위원** 팩트가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위원장께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언론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서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못된 거니까 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 그 기사도 수정할 수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악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면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토론을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된 것을 보면 강압 감사 있었다 그리고 사실 아닌 내용을 조작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된 거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감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이 있었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고 그렇습니다. 핸드폰도 압수해서 절차에 맞지 않게 압수하고 그리고 내용에 맞지 않는, 여기 보면 엄청난 내용을 통째로 검찰에 넘겼다는 겁니다. 핸드폰을 통째로, 1.1TB를 통째로 검찰에 넘겼다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강압 감사하고. 아기가 있는데 어린아기를 돌보던 공무원도 새벽까지 붙잡아 놓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말 못 하던 공무원들이 그날 여기에 나와서 가림막 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로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도 핸드폰을 포렌식할 때는 압수·수색영장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은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협조 안 하면 불이익 당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함부로 포렌식했고 그것을 통째로 검찰에 넘긴 일들이 나와서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임되고 파면당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감사원장님?

○감사원장 김호철 예,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위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고 징계, 해임·파면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일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으로서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고 유병호 사무총장 시절의 이야기였는데요.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지적하면서, 없던 것을 만들어서 감사하면 그게 감사원입니까? 그렇게 타이거파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원이 스스로 자체 쇄신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스스로 감찰하셨고 쇄신하셨고 그리고 파면·해임 요구하시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수사도 의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수정사항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수석의 의견으로는 광규택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아까 특검 관련해서 부대의견에 넣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한규 위원** 아까 문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셨지요? 말씀을 해 주셔야……

○**박형수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데, 적절하더구먼. 오랜만에 적절한 말씀 하시더라고.

○**위원장 서영교** 아까 특수활동비 사용 이 내용이 시정요구(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시정요구(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시정요구(안)에 넣어 놓고 가면 되는데 부대의견으로 넣자고 해서……

시정요구(안)에 들어갔는데 또 부대의견으로 들어갑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저희가 이미 들어간 것은 과거에 이미 집행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마 향후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특별검사……

○**곽규택 위원** 그렇지요.

○**김기표 위원** 문구를 불러 주세요. 문구는 어떤 문구를……

○**위원장 서영교** 문구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우리 곽규택…… ‘우리’ 자를 내가 잘못 넣었는데.

○**곽규택 위원** ‘우리’ 맞아요. 저도 어디 가면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이라고 해요.

○**위원장 서영교** 그 내용 다시 한번 쥬 보세요.

곽규택 위원이 부대의견에 향후 특별검사는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사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달라 이런 내용을 넣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심사하는 내용의 시정요구(안)에 넣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가기관도 모두 국회 결산심사의 대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익명 처리, 비공개 열람, 항목별 제출 등의 방식으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시정의견에 넣었는데 ‘특검이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 예산 사용내역을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넣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의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제5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토론 과정에서 논의하신 내용을 반영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에 대한 소관 기관장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법무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법무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법무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법제처장 조원철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철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원장 김호철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안을 깊이 있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깊이 새겨 향후 기관 운영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원 모두는 국민을 받들며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입법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손인혁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주신 지적사항과 고견을 향후 헌법재판소 운영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장님이 나오시지 않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을 충실히 검토하여 예산집행과 사법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으니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무슨 결재를 통해서 했는지 자료를 잘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한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사실 저희가 일들이 많아 짧은 시간에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6시32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앞서 심사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아까 곽규택 위원께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다시 의사진행발언해서 무난하게 할 수 있게, 가면 좋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곽규택 위원 원래 상임위의 간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정당에서 사실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찬반을 하지 않았던 것이 국회의 관례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례를 뒤집었던 22대 국회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초선 의원이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직접 목격을 했었고 전에 국민의힘 나경원 간사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참 보기 흉하게 무기명 투표소

까지 차려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다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해 가지고 부결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이런 것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당의 김의겸 위원님이 간사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 그 장면이 하도 떠올라서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만들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결로 하자는 그 주장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향후에도 우리 법사위에서 양당의 간사 선임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을 해 주고 아무리 이의가 있는 상대방 인물이라 하더라도 관례는 관례대로 지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할 걸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어서…… 잘했어요.

간사 선임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의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6시35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법안1소위원장을 맡아 왔던 김승원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임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김의겸 위원님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고 토론 안 하신다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 김의겸 위원님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의겸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김의겸 위원** 존경하는 광규택 위원님, 원만하게 처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있다면 우려하는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야당 위원들 잘 모시고 우리 법사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의겸 간사님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님과 함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사위에서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서로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상호 존중하고 먼저 상의하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에 오셨습니다. 법사위 간사 자리가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와주셔서 더 좋은 일만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곽규택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민전 김용민 김의겸 김태규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박형수 서영교 손 솔 윤상현 이성운 주진우

○청가 위원(1인)

박지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원장 김호철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법제처

처장 조원철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중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차장 지성수

임시회의록